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89
----------	-------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김미애 · 이종배 · 우재준

김재섭 · 김기현 · 최수진

성일종 · 김정재 · 서명옥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득(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이하 “퇴직연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분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금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이자 노후 생계안정 장치로 기능하나, 현재는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해외 선진국들 역시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이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 수용성 제고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퇴직일시금

과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일시금과 퇴직 연금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거목 및 제4호 바목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퇴직일시금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퇴직연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3호커목 및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3. ----- ----- -----
가. ~ 처. (생 략)	가. ~ 처. (현행과 같음)
<신 설>	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받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퇴직일시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4.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라 근로자(사용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 외한다)가 받는 대통령령

5. (생략)	<u>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퇴직연금</u> 5. (현행과 같음)
---------	--